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86회 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6. 9. 8 .(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행정경제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제출자 : 구청장

○ 제안일 : 2026. 8. 21.

○ 회부일 : 2022. 8. 24. (의안번호 : 26-93)

2. 제안이유

○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무료 개방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, 설·추석 연휴 기간 구민과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명절 연휴 기간 청사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근거 마련(안 제3조)

4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」

○ 입법예고 : 2026. 7. 16. ~ 2026. 8. 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1 조례의 개정 취지

○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설·추석 명절 연휴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명절 기간 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 주요 개정내용

○ **안 제3조제1항**

- 청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.

○ **안 제3조제1항제1호**

-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**설 연휴 및 대체공휴일**에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.

○ **안 제3조제1항제2호**

-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**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**에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.

○ **안 제3조제1항제3호**

- 설·추석 연휴 외에도 **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**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
3 법적 타당성 검토

○ 본 개정안은 설·추석 명절 기간 청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, 평상시 활용도가 낮은 공공청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**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**.

4 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
○ 명절 기간에는 가족·친지 방문 등에 따른 주차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청사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주차난 완화와 주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5 검토 및 유의사항

○ 안 제3조제1항제3호의 “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는 무료개방 여부를 구청장의 판단에 폭넓게 맡기는 규정인 만큼,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료개방의 대상·기간·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○ 또한, 무료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주차, 시설물 훼손, 안전사고 및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비하여 개방시간, 이용자 준수사항, 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 및 관리인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6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설·추석 명절 등에 청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무료개방에 따른 안전·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료개방 기준과 이용방법, 관리책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